

IBK저축은행 「ISA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ISA 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ISA 정기예금」
- **상품특징**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

(2025.11.01.기준)

구 분	내 용				
가입대상	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를 취급하는 금융회사				
가입금액	■ 최저 1만원 이상				
계약기간	■ 3개월, 6개월, 1년, 2년				
적용이율 등 (세금납부 前)	■ 신규일 또는 자동재예치일 ^{주1}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이 적용됨				
	계약기간	3개월	6개월	1년	2년
	연 이율	1.10%	2.40%	2.50%	2.00%
	연평균수익율	1.10%	2.41%	2.52%	2.03%
	주1)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				
이자계산방법	■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(원미만 절사) 신규일 만기일 $[이자계산 산식] \quad \text{원금} \times \{(1 + \text{약정 이율} / 12)^n - 1\} \quad (n \text{은 경과월수})$				
이자지급방법	■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			
자동재예치	■ 정기예금 만기시 "최초 계약기간" 단위 자동재예치 ^{주2} 주2)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■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				
만기 후 이율	■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				
예금자보호	■ 해당 :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				

예금보험공사

보호금융상품

1인당 최고 1억원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■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																		
중도해지이율	■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 ■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 <table>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 0.4%</td><td>보통예금 이율</td></tr><tr>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0%</td><td rowspan="4">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</td></tr><tr>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2%</td></tr><tr><td>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5%</td></tr><tr><td>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60%</td></tr><tr><td>24개월 이상</td><td>약정이율 × 70%</td><td></td></tr></table> • 계산방법<예시>	예치기간	이 율	비 고	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	예치기간	이 율	비 고																
	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																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																	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																	
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																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																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																	
특별중도해지	■ 특별중도해지 사유 <table><tr><th>특별중도해지 사유</th><th>적용이율</th></tr><tr><td>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- 가입자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</td><td rowspan="3">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</td></tr><tr><td>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</td></tr><tr><td>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</td></tr><tr><td>신탁보수 취득</td><td>가입당시 약정이율</td></tr></table> ■ 특별중도해지 이율 (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) 1. 가입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.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.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.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	특별중도해지 사유	적용이율	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- 가입자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	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	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	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	신탁보수 취득	가입당시 약정이율										
	특별중도해지 사유	적용이율																	
	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- 가입자사망, 해외이주,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	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																	
	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																		
	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																		
신탁보수 취득	가입당시 약정이율																		
자료열람 요구권	•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•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분할 지급 (분할 해지)	■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,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■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
계약의 해지	■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
제한사항	■ 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■ 이 예금은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

3 |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 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,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,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**판매 금융회사, IBK저축은행 고객센터 (1522-7900)**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**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